

의안
번호

1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0. 17.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180호

다. 제출일자 : 2023. 10. 05.

라. 회부일자 : 2023. 10. 12.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구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예방접종의 종류, 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횟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다. 지원 절차, 예방접종 위탁,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환수조치,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보장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8. 17. ~ 2023. 09. 06.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전부개정안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외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추가하여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대상포진은 통증과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은 질환으로 대상포진의 발생은 50세 이상 연령군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이 8~10배 가량 높아 질병관리청에서는 60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 1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

하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진료 항목으로 15만원~60만원에 이르러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2023년 기준 국내·유통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백신	제품명(제조사)	예방접종 비용	접종횟수
약독화 생백신	조스타박스(MSD)	15만원 내외	1회
	스카이조스터 (SK바이오사이언스)	17만원 내외	1회
유전자재조합(사백신)	싱그릭스(GSK) (22. 12. 국내도입)	25만원~30만원 2회: 50만원~60만원	2회

- 따라서 대상포진의 발생 빈도가 높은 고령층 중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

이와 관련한 조례를 시행 또는 예정인 서울시 자치구는 13개 구이며, 성동구와 노원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수급자를 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서울시 자치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 자치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현황〉

〈2023년 7월 기준〉

연번	시행	조례유무	시행일	예방접종 대상
1	금천구	○	2020.9.18.조례 제정 2022.시행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1년이상거주)
2	성동구	○	2018. 취약계층 시작 23.3월 일반확대	65세이상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 70세 이상 일반 어르신
3	서대문구	○	2021년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	광진구	○	2020.3.20.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5	용산구	X	2020년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6	동대문구	○	2018.1.1.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년이상거주)
7	강동구	○	2020.1.1.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거주)
8	노원구	○	2023.2.1.	6개월이상 거주한 75세 이상 어르신 *2024년 65세 이상 확대 시행
9	서초구	○	2023.하반기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	은평구	○	2023.하반기	5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1년이상거주)
11	강남구	○	2023.하반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2	마포구	○	2024.상반기	75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년이상거주) 2024년 65세이상생계,의료급여수급자 (1년이상거주)2025년
13	송파구	준비	2024.상반기	기초생활수급자 연령논의

□ 주요내용

- 먼저 조례의 제명을 인플루엔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반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와 제3조(지원 대상), 제4조(예방접종의 지원 횟수)에서는 무료예방접종의 종류에 대상포진을 추가하고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을 접종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정하고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평생 1회로 규정하고 있음. 2023년 5월 말 기준 성북구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7,329명으로 비용추계에 따른 2024년 소요예산은 3억 8,70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현황

구분	전체인구	65세이상 어르신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비고
성북구(명)	429,689	78,854	7,329	

〈출처 : 성북구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인구현황〉

- 안 제5조(지원 절차)와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비용 및 상환 신청)는 예방접종 지원절차 및 위탁, 비용상환 신청 등에 대해 기존 조례 대비 구체화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 안 제8조(환수조치 등)와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는 예방접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이중으로 지원받을 경우 그 지원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의 범위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전부개정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대상 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제2호1)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2)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등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됨.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감안하여 조례의 목적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